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4 - 1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024.09.30.>」(이하 “규칙”)에 따라 2024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5.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2024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유의사항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서류제출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선정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그 밖에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는 SMP(전력거래가격)와 REC(공급인증서)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입찰 가격 및 계약방식, 발전사업의 적정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에 대한 본인 정보 이외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온라인 입찰 참여서 및 제출된 사업내역서의 입찰가격 오기, 정보불일치, 제출 서류의 미비 및 누락 등은 탈락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입찰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자 정보(발전사업 허가번호, 상호명, 발전소명,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등) 오류로 인하여 계약 미체결이 될 수 있으며, 입찰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관련 사항은 계약당사자(공급의무자 및 선정된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예정인 공급의무자가 제공하는 계약 관련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목 차

I. 공고 용량	4
II. 참여자격	4
가. 참여요건	
나. 참여제한	
III. 입찰시장 구분 및 용량 배분	7
가. 탄소검증제 도입 시점에 따른 시장참여	
나. 시장별 용량 배분	
IV. 입찰 참여서 평가	8
가. 평가 대상 및 방법	
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다. 세부 평가지침	
V. 입찰 세부내용	12
가. 입찰 대상 설비	
나. 입찰 기간	
다. 선정결과 발표	

라. 상한 가격(SMP+1REC 가격)

마. 기준 전력거래가격

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수준별 우대가격

사. 참여 방법

아. 제출서류

VI. 선정 사업자 배분 17

VII. 참여 유의사항 18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나. 설치 기한의 준수

다. 20MW 이상 설비의 준공지연 페널티 및 계약시점

라. 입찰용량

마. 인증제품의 사용 등

바. 공급의무자의 계약 해제·해지 처리 가능 사항

사. 평가 제외 사항

아. ESS 단독입찰 계약 유의사항

VIII. 변경사항 안내 24

IX. 별첨 서류 25

I

공고 용량

□ 공고 용량 : 1,000MW* 이내(설비용량 기준)

* 단,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적격 설비를 제외한 접수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 : 1 이 되도록 최종 선정용량을 결정

** (경쟁률) 접수용량 : 선정용량 = 1.1 : 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에 의뢰한 용량의 합계

II

참여자격

가. 참여요건

- 입찰자 및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설비 또는 해당 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전력저장 설비(ESS)
 2.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설비이어야 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설비가 아니어야 함(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는 제외)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5.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2016),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등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발전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00MW 이상의 발전설비 중 용량을

분할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분할 용량 각각에 대해 매매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 단,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태양광 설비의 연계설비(ESS설비)로 참여하는 발전소는 제외함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태양광모듈, 인버터, 접속함을 사용하여야 함
7. 참여제한 발전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참여제한이 입찰 공고일 전일(前日)에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참여제한 발전소를 타인이 양수한 경우에도 입찰 불가)

나. 참여제한

1) 선정일로부터 5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선정 사업자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2) 선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20MW 미만의 선정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 1MW 미만 설비로 선정된 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1MW 이상 20MW 미만 설비로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 함. 단, 공급의무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계약 당사자간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계통접속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전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연장 가능함.

- 다만, 계통접속지연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가 계통접속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할 경우 향후 3년간 참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한전으로부터 계통접속 지연이 지속되는 사실을 담은 공문 등

- 20MW 이상의 선정 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급의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 * 20MW 이상 설비로 선정된 사업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함. 단, 공급의무자는 1회당 6개월씩 최대 18개월(총 3회) 까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전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연장 가능함.

-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되거나 접속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또는 첨부자료가 허위에 해당하여 선정취소된 경우

3)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한조치 지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대상설비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한조치를 받은 발전소 중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5) 계약해지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 규칙 개정 시행일('22.5.12) 이후 계약 해지한 발전소에 적용

※ 참여 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Ⅲ

입찰시장 구분 및 용량 배분

가. 탄소검증제 도입 시점에 따른 시장참여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20.9.16)을 기준으로 탄소검증 모듈 사용 가부 및 여부에 따라 참여시장 결정

*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고시 제정 '20.5.27일, 시행 '20.6.15일)

- 1) **기존설비 시장**: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 이전('20.9.15일까지)에 모듈계약을 체결하여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발전소 ⇨ **유형①**

* '20.9.15일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제출 필요

* '20.9.15일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제조업체와 '20.9.15일까지 체결한 '모듈공급계약서' 제출 필요

- 2) **신규설비 시장**: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 이후('20.9.16일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 **유형②** 및 **유형③**

* 단, 제조업체의 부도, 모듈의 단종 및 수급여건에 따른 생산지연 등으로 탄소 검증 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객관적으로 증빙가능 시 예외적으로 기존 시장에 참여 가능(모듈 제조사와의 발주 협의기록(이메일, 팩스 등))

< 탄소검증제 도입 시점에 따른 시장참여 >

구분	유형①	유형②	유형③
구분 기간	'20.9.15일까지	'20.9.16일부터	
검증인정서 발급가능 여부	발급불가(선택권 없음)	발급가능(탄소검증모듈 선택가능)	
탄소검증모듈 사용여부	X	X	O
	↓	↓	
시장참여	기존설비 시장 참여	신규설비 시장 참여	

나. 시장별 용량 배분

- '탄소검증제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2개(㉠, ㉡)의 입찰그룹을 분리하여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용량을 배분

< 탄소검증제 도입시점별 입찰그룹 >

구분	기존설비 시장	신규설비 시장
전체 설비	㉠	㉡

IV

입찰 참여서 평가

가. 평가 대상 및 방법

- 입찰자 중 “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입찰 참여서(입찰자 및 그 입찰자의 설비 등)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는 ‘기존설비 시장’ 및 ‘신규설비 시장’으로 구분하여 평가 진행
- 계량평가를 통해 평가대상(1.2배수*, 참여 시장별)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역서 평가 진행

*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적을 경우, 접수용량 모두 평가대상으로 함

-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연계 ESS는 태양광 설비용량 및 가중치 등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평가 진행(ESS 설비용량은 선정용량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내역서 평가 완료된 평가 대상(1.2배수*) 중 계량평가와 사업내역서 평가 합계점수로 선정을 진행

*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적을 경우, 접수용량 모두 평가대상으로 함

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기존시장 ^{주1)}	신규시장 ^{주2)}
계량평가	입찰가격	· 기존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90 · 신규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90	70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 * 630kg-CO ₂ /kW이하 : 20점, 630kg-CO ₂ /kW초과 670kg-CO ₂ /kW이하 : 15점, 670kg-CO ₂ /kW초과 730kg-CO ₂ /kW이하 : 5점, 730kg-CO ₂ /kW초과(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 1점 * 단,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배점 부여	-	20
사업내역서평가	1. 발전소 개발 진행도		2	2
	배점	2점		
	기준	사용전검사 확인증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제출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2	2
	배점	2점		
	기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증서	화재보험, CMI(기관기계)보험 증서	미가입
* 재물손해 및 제3자 피해를 손·배상(자연재해 포함)하기 위한 보험/공제				
3.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3	3	
배점	3점			0점
기준	농·축산·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청설비가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그 외		
4.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frac{(60 - \text{발전소가동기간}^*)}{60} \times 3\text{점}$ * 발전소 가동기간 ^{주3)} :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월부터 공고월까지의 기간(개월) (단,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개월 적용)		3	3	
필수제출	'20.6월말* 이전 설비확인 신청 태양광발전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 임야에 설치한 경우 '19.6월말 이전 설비확인 신청설비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기관 확인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 계			100	100

주1) 기존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발급전('20.9.15까지)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발전소

주2) 신규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 이후('20.9.16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주3) 2023년 3월 3일 이전에 제13조에 따른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이 완료된 태양광발전설비의 발전소 가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경쟁입찰 공고일까지의 기간(개월)으로 적용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20.10월)”의 후속조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이전에 RPS 등록을 신청한 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 대상 설비 >

구분	제출 의무 대상 설비
임야	'19.6.30일 까지 RPS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2 ('19.5.16)호에 따른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시행 이전 설비)
임야 외	'20.6.30일 까지 RPS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 ('20.1.8)호에 따른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시행 이전 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제출할 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건과 동일하게 인정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증빙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증의 검토 의견을 제출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기존, 신규 시장별로 해당 선정용량 범위 내에서 계량평가점수와 사업 내역서 평가점수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

* ‘잔여 선정용량’을 최초로 초과하는 발전설비의 경우, ‘해당 발전소의 전체용량’ 중 ‘잔여 선정용량’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선정하며, 50% 미만인 경우 공급의무자 측과 협의 후 추가 용량에 대해 수용 가능한 경우 선정하고 미수용시 선정하지 않음

- 최종 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1. 계량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2.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3.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4. 사용전검사일이 빠른 경우

다. 세부 평가지침

<계량평가 : 90점>

- 입찰가격지표는 입찰자가 입찰 참여서에 제시한 입찰가격(SMP+1REC 가격의 합산가격)을 이용해 산정기준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
-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평가지표는 20점 이내에서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에 따라 배점 부여
 - * '21년 5월 이후 개정된 신규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사용목적, 신청자명, 허가번호 등 추가)에 대해서만 인정, 이전 검증인정서는 제출 시 1점 부여
 - * 단,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배점 부여
 -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제품 현황은 센터홈페이지(knrec.or.kr) 접속 → '주요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및 검증' 클릭 → '탄소검증제' 클릭 → '추가정보' 클릭 →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발급목록' 엑셀 다운로드하여 조회 가능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1855-3020)

<사업내역서 평가 : 10점>

- 입찰 참여서에 첨부한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
 - 발전소 개발 진행도(2점)
 - 사용전검사확인증, 개발행위허가증, 공사계획신고필증 및 발전사업허가증 중 해당 서류 제출(해당 서류 외 불인정)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2점)
 - 종합보험(공제) 또는 기타 재물손해 보험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
 - 발전소명, 주소 및 제3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불가능한 서류는 기본 점수 부여
 - 보험기간이 공고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는 불인정하며, 기본 점수 부여
 - * 보험을 갱신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발전소 준공 후 운영에 관계된 보험 또는 공제 서류만 인정

-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3점)

·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3점)

* 세부확인 서류는 [별첨2] 사업내역서(표준양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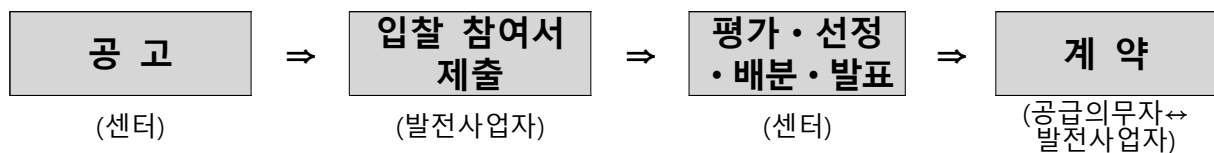
-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3점)

· 발전소 가동기간은 최초 설비확인이 완료된 월로부터 해당 공고월까지의 기간(개월)이며, '23년 3월 3일 이전에 최초 설비확인이 완료된 경우는 '23년 3월부터 해당 공고월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V

입찰 세부내용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 절차 >



가. 입찰 대상 설비

- 1) 태양광설비
- 2) 태양광설비 및 해당설비 연계 ESS설비
- 3) ESS설비(장기계약이 체결된 태양광설비의 연계설비)

나. 입찰 기간 : 태양광 설비용량과 관계없이 일괄 신청

< 입찰 접수 기간 >

2024.10.25.(금) 18:00부터 ~ 11.15.(금) 15:00까지 (주말포함, 상시접수)

* 입찰기간 동안 온라인 입찰 참여서 작성 및 임시저장 가능(단, 제출완료한 입찰 참여서는 수정 불가)

- 접수종료일 마감시간(15시)까지 입찰 참여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입찰 참여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입찰 마감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요망

- 소유권 이전 중인 발전소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기간 전에 공단에 소유권이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입찰참여 시 양수인으로 작성 요망

다. 선정결과 발표 : 2024년 12월 중

라. 상한 가격(SMP+1REC가격)

구 분	육지	제주
상한가격(원/MWh)	157,307	161,291

*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계통연계비용은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입찰 참여(별도 정산 없음)

마. 기준 전력거래가격

구 분	통합
기준 전력거래가격(원/MWh)	86,350

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수준별 우대가격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수준	우대가격(원/MWh)
630kg-CO ₂ /kW이하	12,000
630kg-CO ₂ /kW초과~670kg-CO ₂ /kW이하	9,000
670kg-CO ₂ /kW초과~730kg-CO ₂ /kW이하	2,000

-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가격(SMP+1REC)에 우대가격을 부여하며, 이를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고정가격 계약단가 산정
- ※ 2종 이상 태양광 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우대가격 부여
- ※ 입찰 참여시 제출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수준을 기준으로 우대가격이 부여되며, 선정이후 탄소배출량 수준이 그보다 적은 모델로 변경하더라도 우대가격의 상향 조정은 불가능함
- ※ '21년 5월 이후 개정된 신규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서(사용목적, 신청자명, 허가 번호 등 추가)에 대해서만 인정, 이전 검증 인정서 제출시 우대가격 미부여

사. 참여 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입찰 참여서 작성 및 관련 제출서류를 등록하여 접수
 -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입찰 참여서는 온라인 전산화면에 내용을 직접 기입
- 입찰가격은 SMP+1REC가격으로 원단위로 기재하며,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표기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가격 >

$$\text{입찰가격(원)} = \text{SMP(원)} + \text{1REC가격(원)}$$

*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 제출시, 상한가격 이내에서 우대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재
 - 서류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접속 방법(아래 3가지 방법 모두 가능)
 - ①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 ▶ 홈페이지 주소 : <https://rps.energy.or.kr/loginfst.do>
 - ②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 ‘고정가격계약 바로가기’ 클릭
 - ③ 신·재생에너지센터(knrec.or.kr)접속 → ‘주요사업’ → ‘RPS’의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클릭

아.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PDF 전자파일(5MB 미만)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적으로 첨부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발전소와 설비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발전소(미준공 발전소)를 구분하여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신청 시 제출서류 >

구 분	제출(첨부) 서류 종류	발전소 추진 단계		설 명
		설비확인서 발급 완료	미준공 또는 설비확인서 미발급	
공통서류	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설비 확인 신청서는 불인정)	필수	-	설비확인 완료 발전소
	② 발전사업 허가증 (임시허가증 불인정)	-	필수	설비확인 미완료 발전소
	③ 사업자 등록증	-	필수	
	④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해당하는 경우 제출	
계량 평가 서류	⑤ 제조업체와 모듈구매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급체결 계약서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기존시장 참여
	⑥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서 * '21.5.27 이후 개정된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사용목적, 허가번호 등 포함)만 인정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규시장 참여
사업내역서 평가 서류	⑦ 사업내역서(별첨 서식)	필수	필수	모든 발전소 (증빙서류 미첨부 시 최저 점수 부여)
	㉠ 개발행위허가증 (개발행위 면제 서류 등 불인정)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공사계획 신고필증 (임시 필증은 불인정)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사용전검사확인증 (사용전검사실시확인서는 불인정)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서류 * 발전소 준공 후 운영에 관계된 보험 또는 공제만 인정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구 분	제출(첨부) 서류 종류	발전소 추진 단계		설 명
		설비확인서 발급 완료	미준공 또는 설비확인서 미발급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서류	⑧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 개발행위 허가 비대상일 경우, 관련기관 확인 서류 제출 필요	필수	-	기존시장 참여 발전소 중 제출 의무대상은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기타 서류	⑨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총 괄표제부 포함)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	해당하는 경우 제출	규칙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이용 발전소에 해당하는 경우
	⑩ 시설물 확인 서류 (인·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규칙 별표1에 따른 기존시설물 이용 발전소
	⑪ ESS 관련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확인서류 (지자체 공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임시 필증은 불인정)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전력저장 설비(ESS)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⑫ ESS 설비 시험성적서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PCS) 각각 제출 규칙 별표1에 따른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⑬ 태양광설비 공급인증서 매매 계약서 (ESS설비 단독입찰건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 제출	-	ESS 설비 단독입찰 발전소로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
	⑭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기업부도, 모듈의 단종 및 수급여건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모듈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를 증빙하는 자료(공문 이메일 팩스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규시장’ 참여자 중 예외적으로 ‘기존시장’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⑮ ESS 단독입찰 공급의무자 확인서 [별첨 3] 서식	해당하는 경우 제출	-	태양광설비를 계약한 공급의무자가 본 공고에 선정의뢰하지 않은 경우
	⑯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 비밀 유지 서약서 ([별첨 4] 참고)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해당하는 경우 제출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1MW이상 설비)

* 설비확인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누락시 평가제외될 수 있음

*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대상이 미제출시 평가제외 됨

VI

선정 사업자 배분

○ 다음 각 호의 공급의무자에게 선정의뢰 용량기준으로 선정 사업자를 배분

- | | | |
|-------------|-------------|-------------|
| ① 한국서부발전(주) | ② 한국수력원자력 | ③ 한국중부발전(주) |
| ④ 한국남부발전(주) | ⑤ 한국동서발전(주) | ⑥ 한국남동발전(주) |
| ⑦ 한국지역난방공사 | ⑧ 포스코인터내셔널 | ⑨ 강릉에코파워 |
| ⑩ 삼척블루파워 | ⑪ 한국수자원공사 | |

* 선정의뢰 용량이 큰 순서이며, 선정의뢰 용량이 동일한 경우는 2024년도 총 의무 공급량이 큰 순서임

○ 선정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급의무자의 선정 의뢰 용량 비율별로 배분함

○ 공급의무자가 출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의무자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며, 다수의 공급의무자가 출자한 사업의 경우 해당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받아 우선적으로 배분함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동일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함 (다만, ESS 설비 단독으로 선정된 경우 기존 태양광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자에게로 배정됨)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용량 가중평균 입찰가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 등이 공급의무자간 동일하게 배분되도록 할 수 있음

VII

참여 유의사항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 선정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배분된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시 선정 사업자는 아래 계약방식의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함
 - * 고정가격이란 선정 사업자의 입찰가격과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등 공고문에 명시된 우대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 사업자의 가중치에 따라 결정된 최종 가격을 말함

< 고정가격 계약 방식 >

□ 탄소배출량 수준 730kg-CO₂/kW 이하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고정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 {(입찰가격+우대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기준전력거래가격을 적용
(기준전력거래가격 : 86,350원/MWh(통합))

(예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630kg-CO₂/kW 이하 모듈 사용 및 입찰가격 150,000원에 선정된 경우(가중치 1.2 고려)

$$\text{- 고정가격} = 86,350 + \{(150,000 + 12,000) - 86,350\} \times 1.2 = 177,130 \text{원/MWh}$$

□ 탄소배출량 수준 730kg-CO₂/kW 초과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및 기존시장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고정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 (입찰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기준전력거래가격을 적용
(기준전력거래가격 : 86,350원/MWh(통합))

(예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730kg-CO₂/kW 초과 모듈 사용 및 입찰가격 150,000원에 선정된 경우(가중치 1.2 고려)

$$\text{- 고정가격} = 86,350 + (150,000 - 86,350) \times 1.2 = 162,730 \text{원/MWh}$$

※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 계약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지급단가 >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 = (고정가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 ÷ 가중치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인증서(REC) 지급단가는 '0'으로 적용
 ※ 월단위 전력거래가격은 전력거래처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월 가중평균 SMP를, 전력거래소에서는 시간대별 SMP를 적용 (세부사항은 공급인증서 계약일반조건 참고)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과 ESS는 각각 별도로 계약 체결

- 다만, ESS설비에서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일부(일정비율)를 기존 태양광 설비의 계약단가(태양광설비 가중치 적용)로 거래하고 있는 경우, ESS 설비에 대한 별도 계약은 'ESS설비에서 발급된 공급인증서 전체^①에서 위에서 말한 '태양광설비의 계약단가로 거래 중인 공급인증서^②를 차감하고 '잔여 공급인증서^③'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ESS설비의 잔여 공급인증서^③ =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량 전체^① - PV단가로 거래중인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량^②

- 매매계약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해당 설비(태양광 또는 태양광 연계 ESS)로부터 발생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함

- 계약일 이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

* 계약일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함

-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의 공급인증서 발급일로부터가 아님

나. 설치 기한의 준수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MW 미만은 7개월 이내, 1MW 이상 20MW 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 20MW 이상의 경우 24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20MW 미만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계통접속지연*(송·배전 사업자의 귀책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에서 연장가능

* 단, 한전 계통접속 지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실을 공문서로 입증하여야 함

- 20MW 이상의 경우 계약체결후 24개월이 경과한 후 1회당 6개월씩 최대 18개월(총3회)까지 준공지연 페널티(낙찰가 감액) 부여 후 기간 연장이 가능
* 1차 연장(6개월), 2차 연장(6개월, 누적 12개월), 3차 연장(6개월, 누적 18개월)

다. 20MW이상 설비의 준공지연 페널티 및 계약시점

- 20MW 이상 설비로 선정된 사업자가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4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준공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 동안 20MW이상
설비의 낙찰평균가 하락률의 120% 만큼 당초 계약된 낙찰가에서 감액
- 첫 6개월 기간연장시에는 선정된 해당회차의 20MW이상 설비 낙찰
평균가(a)에서 해당 입찰이후 첫 번째 20MW이상 설비 낙찰평균가(b)까지
하락률($=\frac{a-b}{a} \times 100$)의 120%를 당초 계약된 낙찰가(c)에서 감액하고,
- 이후 2~3차 기간 연장시, 매 6개월 마다 입찰 회차를 가산하여 20MW
이상 설비 낙찰평균가 하락률의 120% 만큼, 낙찰가격(c)에서 감액
- 기간 연장 이후 사용전검사 완료시, 선정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는
20MW이상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감액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함

라. 입찰용량

- 입찰용량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용량의 90%이상
110%이하로 신청이 가능
-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중 100MW 이상의 발전설비는 최소 40MW이상의
용량으로 분할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선정 공고별로 하나의 분할된 설비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분할된
설비는 설비확인 신청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하여야함

마. 인증제품의 사용 등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는 반드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따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바. 공급의무자의 계약 해제·해지 처리 가능 사항

1) 계약체결일로부터 기간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1MW 미만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 1MW 이상 20MW 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계약당사자간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이내(단, 계통접속지연(송·배전 사업자의 귀책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발전소 설치기간을 연장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20MW 이상 설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단,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1회당 6개월씩 최대 18개월(총 3회)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전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모두 경과했음에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감액된 가격으로 재계약체결기한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20MW 이상 설비가 발전소 설치기간을 연장(1회당 6개월씩)하여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사용전검사 완료일로부터 재계약 체결기한(2개월)까지 당초 낙찰가격에서 감액된 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3) 태양광과 태양광 연계 ESS로 선정이 된 경우에, 태양광 또는 태양광 연계 ESS중 하나의 설비라도 계약일로부터 설비규모별 발전소 설치 기간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4) 입찰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되거나 접속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또는 첨부자료가 허위에 해당하여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이 같거나 그보다 높고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이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은 모델로 변경한 경우
 - *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은 한국산업표준 KS C 8561에 따른 KS인증서 부속서2의 정격효율을 기준으로 함
 - ** 탄소배출량 구간 : 630kg·CO₂/kW이하 / 630kg·CO₂/kW초과 670kg·CO₂/kW이하 / 670kg·CO₂/kW초과 730kg·CO₂/kW이하 / 730kg·CO₂/kW초과 (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2. 인버터, 접속함 등 기타 설비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 5)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6) 참여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공고문의 ‘II. 참여자격’ 참고
- 7) 참여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 8) 선정된 사업자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9) 기타 공고내용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 평가 제외 사항

- 입찰자는 선정 공고별로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하나의 입찰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 중복으로 입찰 참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발전소 입찰 참여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 대상 설비가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경미한 대상임을 증명할 서류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입찰자는 제출 완료한 입찰 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음
 - ※ 입찰가격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참여 취소 공문(문서)을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 입찰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취소 후 입찰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ESS 단독입찰 계약 유의사항

- ESS 단독입찰의 경우 선정시 태양광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급의무자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입찰공고에 선정의뢰를 하지 않은 공급의무자*와 태양광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SS설비에 대한 계약 가능여부를 입찰자가 입찰 참여 이전에 공급의무자로부터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함
 - * 선정의뢰한 공급의무자는 VI 선정사업자 배분(p .17)을 참고
 - ** [별첨3]의 확인서 제출
- 선정의뢰를 하지 않은 공급의무자로부터 사전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공급의무자가 거절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음

VIII

변경사항 안내

- '24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부터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입찰가격에 우대가격 부여

- 선정사업자의 입찰가격과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등 공고문에 명시된 우대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고정가격계약 체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수준	우대가격(원/MWh)
630kg-CO ₂ /kW이하	12,000
630kg-CO ₂ /kW초과~670kg-CO ₂ /kW이하	9,000
670kg-CO ₂ /kW초과~730kg-CO ₂ /kW이하	2,000

- ※ 2종 이상 태양광 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우대가격 부여

- ※ 입찰 참여시 제출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수준을 기준으로 우대가격이 부여되며, 선정이후 탄소배출량 수준이 그보다 적은 모델로 변경하더라도 우대가격의 상향 조정은 불가능함

- ※ '21년 5월 이후 개정된 신규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서(사용목적, 신청자명, 허가 번호 등 추가)에 대해서만 인정, 이전 검증 인정서 제출시 우대가격 미부여

-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안내

- (참여대상)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1MW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서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참여방법) [별첨4]의 [양식1]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 및 [양식3] 비밀 유지 서약서를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참여서 등 제출 시 함께 제출

- ※ 기타 상세사항은 [별첨4]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 가이드라인」참고

IX

별첨 서류

- ①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온라인 신청서 작성)
- ② 사업내역서(표준양식)
- ③ ESS단독입찰 공급의무자 확인서
- ④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 가이드라인

* PPA계약 중개를 희망하는 1MW이상 발전설비 사업자에 한함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관련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전화 1855-3020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제도 및 제품 관련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 전화 1855-3020

○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관련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정책실 : 전화 052-920-0905,0907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공급인증서 거래 관련 문의

☞ 전력거래소(전력신사업처 신재생시장팀) : 전화 1600-9617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온라인 신청서 작성)

* 본 참여서의 내용은 본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에 내용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5.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					
사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발전소	발 전 소 명				
	설치장소 소재지				
	발전사업허가번호		허 가 용 량		kW
참 여 내 용	에너지원		ESS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에너지원 입찰용량	kW	ESS 입찰용량	배터리	kWh
	입찰가격 (SMP+1REC)			PCS	kW
	탄소배출량	kg·CO2/kW		※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사용 시 기재 ※ 모듈 검증코드는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의 검증코드 기재	
	모듈 검증코드				
	발전소 입지	2021.7.27. 이전 기준 적용 시		2021.7.28 이후 기준 적용 시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0~1.5) ☐ 수상태양광(가중치: 1.5) ☐ 일반부지(가중치: 0.7~1.2) ☐ 임야(가중치 : 0.7)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0~1.5) ☐ 수상태양광(가중치: 1.2~1.6) ☐ 일반부지(가중치: 0.8~1.2) ☐ 임야(가중치 : 0.5)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본 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참여자 년 월 일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사업내역서(표준양식)

* 본 사업내역서는 작성 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에 첨부 서류로 제출 바람

사업내역서(표준양식)

1. 참여자 및 발전소 개요

상 호 명		발전 사업 허가 용량	kW
발전소명		태양광	kW
대 표 자		입 찰 용 량	배터리 (ESS)
발 전 소 소 재 지		전력변환장치 (ESS)	kWh
			kW

* 입찰용량란에는 실제 준공된 설비 용량 또는 설치 예정 용량을 기재

1.1 발전소 입지(가중치 적용 내용을 기재, 택일사항)

○ '21년 7월 27일 이전 가중치 기준 적용 발전소

(단위 : kW)

입지 (가중치)	건축물 이용(1.0~1.5)	기존시설물 이용(1.0~1.5)	수상태양광 (1.5)	일반부지 (0.7~1.5)	임야 (0.7)	합 계
설비용량						

* 입지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합계는 참여용량과 동일해야 함

○ '21년 7월 28일 이후 가중치 기준 적용 발전소

(단위 : kW)

입지 (가중치)	건축물 이용(1.0~1.5)	기존시설물 이용(1.0~1.5)	수상태양광 (1.2~1.6)	일반부지 (0.8~1.2)	임야 (0.5)	합 계
설비용량						

* 입지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합계는 참여용량과 동일해야 함

2. 사용되는 주요 부품

2.1 태양광 모듈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 조 회사			
제 조 국			
출 력(W)			
매 수(장)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2.2 태양광 인버터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 조 회사			
제 조 국			
출 력(kW)			
매 수(개)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2.3 전력저장 설비(ESS) 축전지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 조 회사			
제 조 국			
출 력(W)			
매 수(개)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2.4 전력저장 설비(ESS) 전력변환장치

구 분	단일제품 사용 시	2종 이상 제품 혼용 시	
모 델 명			(필요시 추가)
제 조 회사			
제 조 국			
출 력(kW)			
매 수(개)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3. 사업내역서 평가 부문(* 해당항목에 “√” 표시한 후, 관련 입증서류는 별도 제출)

3.1 발전소 개발 진행도

사용전검사확인증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발전사업허가증

* **[발전소 개발 진행 확인서류]**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 또는 공사계획 신고필증, 사용전검사 확인증

3.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증서	화재보험 또는 CMI(기관기계)보험 증서	미가입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확인서류]** 종합보험(공제) 또는 기타 재물손해 보험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

☞ 종합 보험/공제 : 태양광 발전설비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및 운영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공제

3.3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농·축산·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청설비가 RPS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그 외

3.4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23.03.03 이전 설비확인 완료 설비	‘23.03.04 이후 설비확인 완료 설비	미준공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확인서류>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4 서식에 의거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서 발급**

○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 **(축산업인) 축산업 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24호, 제29호의3 서식에 의거하여 **지자체에서 발급**

○ **(주민참여형 설비)**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하여 ‘주민참여형설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참여주민은 태양광발전소의 소재지가 속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단, 토지 참여주민은 제외), 최소 5인 이상 참여, 1인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은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이어야 함

ESS단독입찰 공급의무자 확인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ESS단독입찰 공급의무자 확인서

입 찰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태양광 용량(kW)		kW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된 입찰자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ESS 단독입찰 참여에 동의하고, 참여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자와 계약단가로 상업운전개시일(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5년의 기간 동안 ESS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의무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 가이드라인

2024. 1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 안내문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은 '24년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에 근거한 자발적 시장 조성의 일환으로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PPA 초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금번 시범운영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의 작동 여부 확인, 원활한 PPA 계약 성사를 위한 편의성, 글로벌 RE100 이행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MW 이상 발전소, 글로벌 RE100 참여기업 등 한정된 대상 및 범위로 진행합니다.

금번 시범운영은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등의 참여 및 정보공개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PPA 중개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시범운영 결과는 추후 본사업 추진 등을 위해 통계 형태로만 공유될 계획이며, 향후 PPA 중개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본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을 통하여 PPA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PPA계약 체결은 사적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PPA계약 체결 과정 및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동 PPA 중개시장 운영주체는 PPA 계약의 법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계약의 적법성을 진술·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PPA 계약체결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 차

1. PPA 중개시장 개요	35
2. 세부 운영 방안	36
3. 이행관리	40
[양식1]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발전사업자용-태양광]	41
[양식2]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전기사용자용-태양광]	43
[양식3] 비밀 유지 서약서[공통-태양광]	45

1. PPA 중개시장 개요

1-1. 운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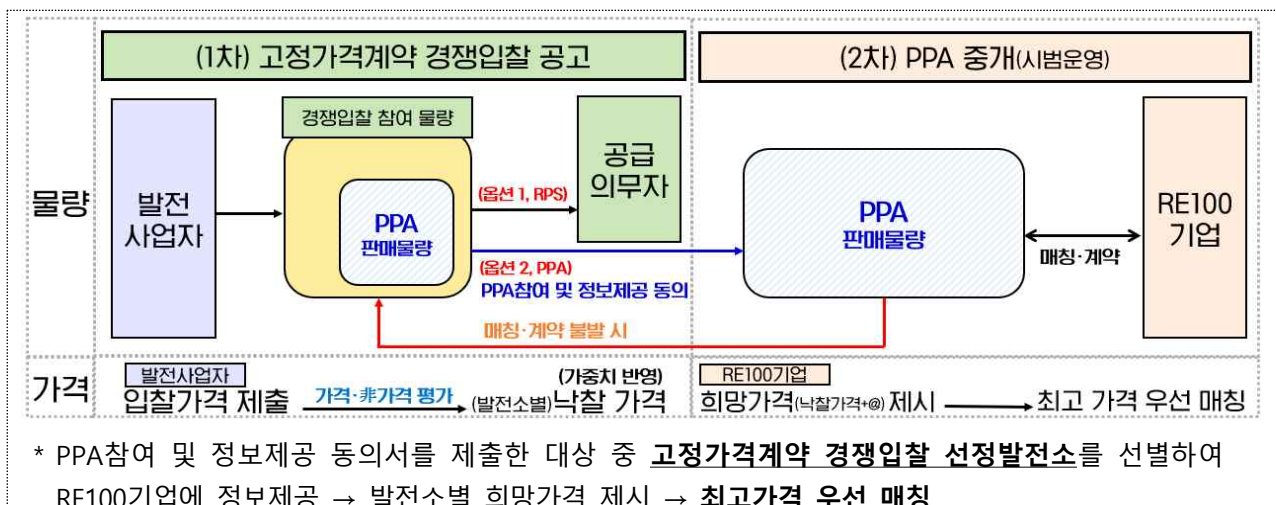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24.05)

1-2. 운영 방향

-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RE100 기업) 등의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장과 연계하여 운영
 - 공단은 동의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를 매칭
 -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지침을 따르되 당사자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함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 PPA 계약은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로 「민법」, 「상법」 등 사적 계약 관련 법령 적용 원칙, 사인 간 민사법 법리인 사적자치의 원칙 존중

1-3. PPA 중개 시장 개념도

□ PPA 중개시장(시범운영)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연계하여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2-2-1. 입찰참여자]에 한함



2. 세부 운영 방안

2-1. 운영 절차

<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운영 절차 >

1차 RPS 입찰연계	①공급물량·상한가 산정 RPS운영위원회	②RPS공고* 공단	③신청 발전사업자 → 공단 전기사용자 → 공단	④평가 및 선정 공단
2차 PPA중개 (시범운영)	①발전소 선별 및 정보제공 등 안내 공단 → 전기사용자	②희망가격 등 제시 전기사용자 → 공단 (14일)	③희망가격 등 정보제공 및 최종동의 발전사업자 ↔ 공단 (14일)	④매칭·계약 추진 계약대상자 (약 2개월)

* RPS 공고는 “2024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4-12호)를 말함(이하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 2차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운영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2. 입찰 사항

2-2-1. 입찰참여자*

*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양식3] 비밀 유지 서약서(공통-태양광)” 제출 必

□ (발전사업자) 1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를 통하여 “[양식1]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발전사업자용-태양광)” 를 제출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

* 금번 시범운영은 1MW 이상의 발전소에 한하여 추진하며, 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대상(“상한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 등) 조건에 만족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시 제출한 정보를 PPA 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대상자인 전기사용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에게 제공함

※ 정보제공 항목은 낙찰가격(가중치 반영), 발전소 용량, 발전소 설치 지역, 발전소 가동 여부(가동 중인 발전소는 상업운전개시일), 발전소 입지, 가중치, 주요 부품(모듈, 인버터) 정보 등 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시 제출한 정보와 “[양식1]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발전사업자용-태양광)”에 포함된 최소 발전 시간 등 포함

□ (전기사용자) 1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시 “[양식2] PPA 참여 정보제공 동의서(전기사용자용-태양광)” 를 제출한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

* 금번 시범운영은 글로벌 RE100 참여기업(36개)의 모기업 대표법인에 한하여 추진함

※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전소별 최고가격을 제시한 기업의 기업명, 희망가격, 계약방식(직접PPA, 제3자PPA) 등의 정보를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함(단, 전기사용자가 최고가격 입찰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발전사업자에 해당 정보제공)

2-2-2. 입찰 참여 방법

□ (발전사업자) “[양식1]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발전사업자용-태양광)” 및 “[양식3] 비밀 유지 서약서(공통-태양광)”를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참여서 등 제출 시 함께 제출

□ (전기사용자) “[양식2]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전기사용자용-태양광)” 및 “[양식3] 비밀 유지 서약서(공통-태양광)”를 메일*로 제출**

* RE100운영팀 메일(reuse@energy.or.kr)로 제출 후 누락 방지를 위해 유선번호 (052-920-0905, 0907)를 통하여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할 것

** 제출 기한은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마감 기한 내 제출을 완료할 것

2-2-3. 입찰대상발전소

□ 「2-2-1. 입찰참여자(발전사업자)」의 입찰가격이 ^{1차}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상한가를 초과하지 않는 1MW 이상 태양광발전소*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서의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발전소에 한함

2-2-4. 입찰가격

□ ^{1차}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가격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한가격” 이하의 금액을 말함

□ ^{2차}PPA 중개(시범운영)에서 입찰가격은 “희망가격”으로 명칭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제공하는 발전소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전기사용자가 발전소별로 제시하는 금액(발전소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함

* 발전소 관련 정보로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낙찰가격은 $SMP + 1REC \times \text{가중치}$ 또는 $SMP + (1REC \times \text{가중치}) + \text{추가가중치}$ 를 적용한 값을 말함

○ 또한, “희망가격”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또는 한전) 간의 “전력공급계약” 단가로 발전사업자가 보장받는 금액을 의미

* 재생E전기공급사업자(또는 한전)과 전기사용자 간의 계약 단가는 별도 협의 필요

○ 과도한 저(低)가격 제시(^{1차}입찰 시)로 시장교란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 등 필요시 ^{2차}PPA 중개(시범운영)의 희망가격에 대한 상한가격 설정 가능*

* ^{1차}입찰 평가·선정 후, 우려사항 발생 시 발전소별 낙찰가격과 연계한 가격설정 검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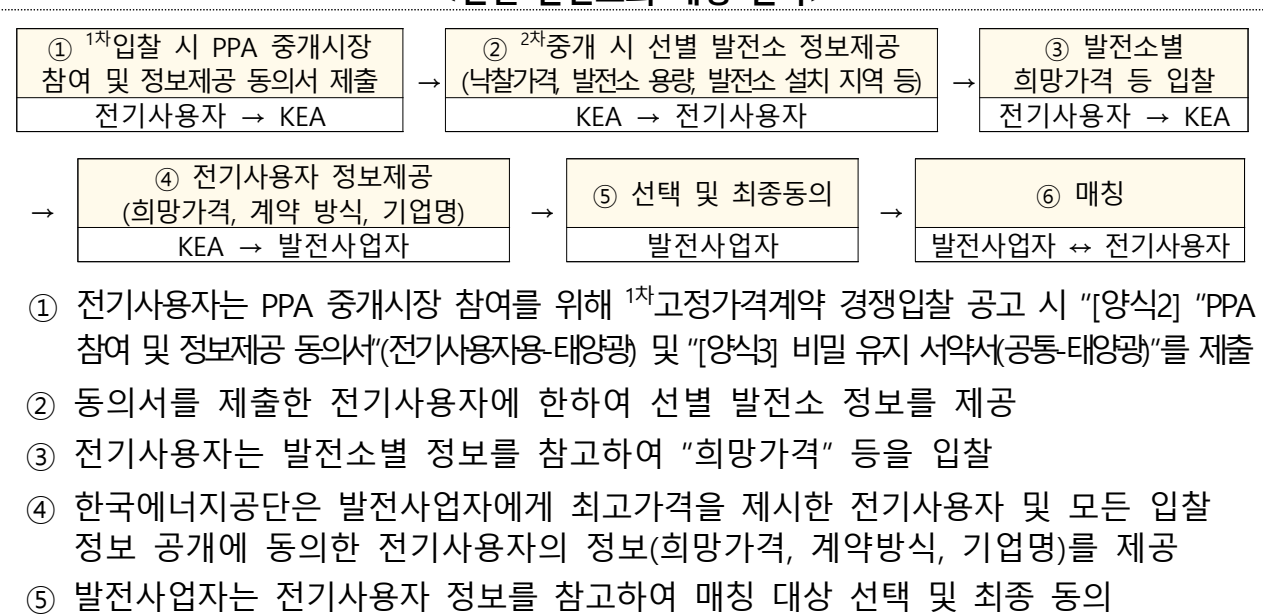
2-2-5. 2차 PPA 중개(시범운영) 발전소의 선별

- 「2-2-3. 입찰대상발전소」 중 1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의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된 발전소 중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를 동의한 발전소

2-2-6. 선별 발전소의 매칭

- 전기사용자는 [2-2-5. 2차 PPA 중개(시범운영) 발전소의 선별] 이후, 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발전소별 희망가격을 입찰하며 최고가격 우선 매칭
- 최고가격을 제시한 전기사용자의 매칭을 우선하나, 후 순위 가격을 제시한 전기사용자가 최고가격 입찰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제공
 -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제시한 희망가격 및 계약방식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등을 참고하여 매칭 상대를 최종 선택
 - 금번 시범운영은 매칭 후 협의 결렬 시 추가 매칭은 불허하며, 매칭 기간을 고려하여 1:1:1 계약 방식*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전기사용자가 N개의 발전소와 매칭되어 1개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계약을 추진할 때 편의를 위해 N(발전사업자):1(공급사업자):1(전기사용자) 계약 형태로 진행은 가능
- 2차 PPA 중개(시범운영)에서 전기사용자의 입찰 물량*을 제한 할 수 있음
- * 전기사용자가 매칭 하고자 하는 순위별 물량을 제한 (1순위 00MW, 2순위 00MW) → 우선순위별 최고가격 매칭 하는 방식 등 입찰 물량 제한 할 수 있음)

<선별 발전소의 매칭 절차>



2-3. 계약 사항

2-3-1. 계약대상자

-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원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전기사용자로 하며,
 -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되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함
- 전기사용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원하는 경우, 계약 대상자는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한전), 전기사용자로 하며,
 -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되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함

※ 계약 방식에 따라 계약 대상자가 다르며, 금융 조달 여건이 달라짐을 파악하고 협의를 진행할 것

2-3-2. 협의 기한

-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매칭 이후 약 2개월의 협의 기한을 부여함*
- * 구체적인 협의 기한은 ^{2차}중개 안내(입찰가능물량, 발전소정보제공 등) 시 별도 안내 예정

2-3-3. 계약 기간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동일한 20년을 원칙으로 함

2-3-4. 매칭·계약 불발에 따른 준수사항

- 동 PPA 중개시장 시범운영에서의 매칭·계약 불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함
 - 선별 발전소의 입찰자가 없거나, 발전사업자가 매칭을 포기하는 경우
 - 「2-3-2 협의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 * 협의기한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매칭된 계약대상자 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3-1. 이행여부확인시)(단, 최종 계약 불발 시 향후 고정가격 입찰 참여 제한)
 - 그 밖의 계약대상자 간 계약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매칭·계약 불발 시 “^{1차}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발전소”는 RPS 규칙 제29조에 따라 ^{1차}낙찰된 금액으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함
 - 공급의무자 배분 이후,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미 계약 시 RPS 규칙 제31조 1항 1호에 따라 5년간 참여 제한이 발생

3. 이행 관리

3-1. 이행 여부 확인

3-1-1. 발전사업자 이행 여부 확인

- ☐ 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시 제출한 입찰 참여서 및 사업 내역서,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대상자 간 협의를 우선시하나, 당사자 간 협의 범위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양식1]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발전사업자용-태양광)”에 포함된 최소 발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계약대상자 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3-1-2. 전기사용자 이행 여부 확인

- ☐ 2차 PPA 중개(시범운영)를 통하여 제시한 희망가격 등을 준수하여야 함

3-2. 인센티브 제공

- ☐ [3-1-1. 발전사업자 이행 여부 확인]을 충족한 발전사업자에게 「기업재생에너지 펀드」 심층 평가 시 가점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3-3. 패널티 부여

- ☐ [3-1-1. 발전사업자 이행 여부 확인]을 미 충족한 발전사업자의 [3-2. 인센티브 제공]의 인센티브를 취소할 수 있음
- ☐ [3-1-1. 발전사업자 이행 여부 확인]을 미 충족한 발전사업자 및 [3-1-2 전기사용자 이행 여부 확인]을 미 충족한 전기사용자의 PPA 중개시장 참여를 3년간 제한 할 수 있음

※ 단, 1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외 사유 및 희망가격 변동이 아닌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패널티 부여를 제외할 수 있음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연계된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제반 정보제공에 동의하며,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발전사업자는 입찰, 선정,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선정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발전사업자는 서류 제출 전에 해당 공고 사항, 참여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칙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전사업자는 최소 발전 시간 0.0hr/일(기입 필요)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최소 발전 시간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계약 시 협의를 통하여 변경 가능
- 발전사업자는 PPA 중개시장 및 적정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PPA 중개시장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전사업자가 본 PPA 중개시장 운영에 따라 PPA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PPA 체결은 사적계약에 해당합니다. PPA 체결과정 및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 관계 등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PPA 중개시장 운영주체는 PPA 계약의 법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계약의 적법성을 진술·보장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이해하고 확인합니다.
- 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제출한 정보(입찰 가격, 발전소 용량, 지역 등)를 PPA 중개시장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전기사용자 등에게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 발전사업자는 이행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취소와 참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전사업자는 PPA 중개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0 0 0 대표이사 0 0 0 (직인)

(개인인 경우) 발전사업자 0 0 0 (서명/인)

※직인은 법인인감 도장으로하며, 법인 인감 여부확인을 위해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 인감으로하며, 등록 인감 여부확인을 위해 인감 증명서 제출

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발전사업자용-태양광)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에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시 제출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 “사업내역서” 상의 성명, 연락처, 낙찰가격(가중치 반영), 발전소용량, 발전소 설치지역, 발전소 가동여부, 발전소 입지, 가중치, 주요부품(모듈,인버터) 등의 제출 정보 및 “[양식1]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발전사업자용-태양광)” 상의 최소 발전시간 등 제출 정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 시범운영, 본 사업 도입을 위한 연구자료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를 위해 [양식2]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전기사용자용-태양광)을 제출한 전기사용자, 해당 전기사용자와의 협상대상자인 재생 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 시범운영 참여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과 상동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기업명 0 0 0 대표이사 0 0 0 (직인)

(개인인 경우) 발전사업자 0 0 0 (서명/인)

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전기사용자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연계된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제반 정보제공에 동의하며,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전기사용자는 입찰, 선정,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선정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입찰, 선정,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전기사용자는 서류 제출 전에 해당 공고 사항, 참여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칙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기사용자는 PPA 중개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PPA 중개시장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기업의 책임하에 희망가격을 입찰합니다.
 - 전기사용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제공하는 발전소 정보를 활용하여, 희망가격을 입찰하며 발전소 매칭 이후 공단에서 제시하는 일정기간의 협의 기간 가집니다.
 - 전기사용자는 협의 기간 중 발전사업자가 금융 조달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 전기사용자는 이행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참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전기사용자가 본 PPA 중개시장 운영에 따라 PPA를 체결하는 경우, 해당 PPA 체결은 사적계약에 해당합니다. PPA 체결과정 및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 관계 등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및 PPA 중개시장 운영주체는 PPA 계약의 법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계약의 적법성을 진술·보장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이해하고 확인합니다.
 - 전기사업자는 PPA 중개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한 정보(희망가격, 계약방식, 기업명 등) 일체를 입찰대상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해당 항목은 선택항목이며, 미동의하는 경우 최고가격 입찰시에만 정보 제공함

2024년 월 일

기업명 0 0 0 대표이사 0 0 0 (직인)

※직인은 법인인감 도장으로하며, 법인 인감 여부확인을 위해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

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전기사용자용-태양광)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에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업명, 희망가격, 희망계약방식 등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관련 제출 항목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 시범운영, 본 사업 도입을 위한 연구자료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전기사용자가 희망 가격 등을 입찰한 입찰대상발전소의 발전사업자 (단, 전기사용자 최고가격을 입찰하는 경우에 한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 시범운영 참여	기업명, 희망가격, 희망계약방식 등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관련 제출 항목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최고가격 입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한 정보(희망가격, 계약방식, 기업명 등)
일체를 입찰대상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해당 항목은 선택 항목이며, 참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년 월 일

기업명 0 0 0 대표이사 0 0 0 (직인)

비밀 유지 서약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를 서약한다.

제1조(서약의 목적) 이 서약은 계약당사자 간 제공하는 정보 일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 정보의 정의) 계약당사자 간 제공하는 정보라 함은 “발전사업자”의 경우 낙찰가격(가중치 반영), 발전소 용량, 발전소 설치 지역, 발전소 가동 여부, 발전소 입지 등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시 제출한 정보 일체와 “[양식1]PPA 참여 및 정보제공 동의서(발전사업자용-태양광)”에 포함된 최소 발전 시간 등을 말하며, “전기사용자”의 경우 기업명, 희망가격, 계약방식 등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를 위해 제출한 정보 일체를 말한다.

*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의 정의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 참여가이드상의 [2-2-1. 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대상자의 정의) 계약대상자는 희망계약방식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원하는 경우,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전기사용자로 하며, 전기사용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원하는 경우,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로 한다.

제4조(제공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계약당사자 간 제공 하는 정보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시범운영)”과 관련한 협상 및 협의를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5조(제공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 계약대상자 간의 정보 공유를 원칙으로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대상자 간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계약대상자 간 이 서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기업명	0 0 0	대표이사	0 0 0		(직인)
(개인인 경우)		발전사업자	0 0 0		(서명/인)